



2023년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용자 및 이차보전사업 안내

안산시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의 오염물질 적정처리 및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 용자사업 및 이차차액 보조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□ 안산시 용자 및 이차보전 사업

구분	안산시 용자사업	이차보전사업
목표	100억원 (업체당 10억원 이내)	2.4억원
대출금리	대출이자 전액 보전	
용자기간	7년 (2년거치 5년 균분상환)	
취급은행	농협은행, 기업은행, 하나은행	
담보 등	거래은행 약관에 의함	

○ 사업장이 안산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시설을 구입·설치·변경하고자 하는 기업

- 대기오염방지시설, 공동방지시설, 대기TMS
- 휘발성유기화합물억제·방지시설(VOC 제거시설)
- 악취방지시설
- 수질오염방지시설, 공동방지시설
-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
-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비

* 「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조례」 제4조의2 (보조·용자대상 및 조건)에 따른 대상자 및 시설

※ 용자제외 대상

- 용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
- 대상시설을 이미 설치완료 하였거나 가동 중인 사업자
- 다른 기관으로부터 용자를 받아 설치 중에 있거나, 용자추천을 받은 사업자
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 신청한 사업자

□ 타기관 이차차액 보조사업

- 대상사업 : 경기도, 한국환경산업기술원, 한국에너지공단 환경자금 용자 이차 보조
 - 이차보조 : 용자액 중 10억의 범위에서 기업체가 부담해야할 이차액 중 일부
 - 용자규모 및 지원 조건 : 기관별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
- * 「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조례」 제4조의4 (이자차액 보조사업 등)에 따른 사업

□ 용자신청 및 접수

- 기 간 : 연중 수시(자금 소진시까지)
- 접 수 처
 - 공단 외: 환경교통국 환경정책과(☎481-2888)
 - 공단 내: 산업지원본부 산단환경과(☎481-3974)
- 구비서류
 - 용자신청서 1부
 - 사업계획서 1부
 - 배출시설설치허가(신고)필증 사본 또는 오수처리 시설설치(변경)필증 사본 1부
 - 공사계약서 사본 1부
 - 중소기업입증서류(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, 최근 1년간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, 세무서장 또는 세무사·공인 회계사가 발행한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등) 1부
 - 공장등록증 사본, 사업장소재지 약도, 용자시설 설계 시공업체 등록증 각 1부
 - 공동방지시설 운영규약 1부(해당자에 한함)
- ※ 신청서는 안산시 홈페이지(<http://www.ansan.go.kr/>) 고시/공고 또는 새소식(2023년 환경보전기금 용자금 신청안내)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

□ 용자검토 및 결정

- 서류접수 ⇒ 구비서류 접수·검토(현장 확인) ⇒ 용자결정통보(10일 이내) ⇒ 공사완료 후 완공심사(서류와 현장)⇒ 업체에서 해당은행에 용자신청

※ 문의처

	부서명	전화번호
공단 외	환경정책과	481-2888
공단 내	산단환경과	481-3974